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

2024년 11월 26일 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11월 13일, 금천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11월 13일 회부

다. 상정일자 : 제2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
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4년 11월 26일)

○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2024년 조직진단 결과에 따른 소관 업무의 변경 및 조직 개편을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와 인력을 적절히 배치 및 운영하고 신규행정 수요와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행정안전국 소관이었던 특별사법경찰제도 운영 업무를 교통건설국 소관으로 변경(안 제5조제2항제4호 및 제10조제2항제1호)
- 세무부서 분리 및 신설에 따른 부서 명칭 및 소관 업무 정비 (안 제6조)
- 기획경제국 소속 세무1과, 세무2과 → 세무관리과, 재산세과, 지방소득세과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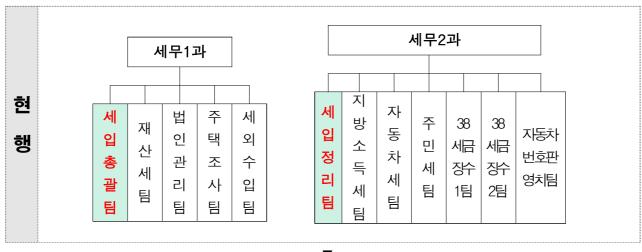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조직진단 결과에 따른 소관 업무의 변경 및 조직 정비사항
 을 반영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
- 주요 개정내용으로는
- 안 제5조 제2항 제4호 및 제10조 제2항 제1호에서는 행정안전국 소관이었던 특별사법경찰제도 운영 업무를 교통건설국 소관으로 변경하고,



- 안 제6조에서는 기획경제국 소속 세무1과, 세무2과를 세무관리과, 재 산세과, 지방소득세과로 변경함.



▼ 1부서 신설, 3개팀 증, 1개팀 통합



 본 개정조례안은 연1회 실시하는 행정안전부의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, 조 직개편을 위해 관련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**답변요지**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**기타 필요한 사항** : 없 음